

서울특별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2. 4.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I .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경위 및 편성요건¹⁾

-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 '22년 3월 17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서울시의 경우, 조례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II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4조 2,449억원 대비 2.5%, 1조 1,239억원을 증액한 45조 3,688억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임

〈표 2-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⑤=④-①	기정예산 대비 증감률 ⑤/①	
	당초예산 ②	간주처리 ③				④
	①=②+③	②	③	④	⑤=④-①	⑤/①
총 계 규 모	44,244,927	44,219,047	25,880	45,368,868	1,123,940	2.5
일반 회 계	31,365,348	31,342,459	22,889	32,196,499	831,150	2.6
특 별 회 계	12,879,579	12,876,588	2,991	13,172,369	292,790	2.3

- **세입예산중 일반회계**는 8,31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바,
 - ①'2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될 순세계잉여금 7,005억 5,000만원을 포함한 잉여금 8,303억 4,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요청하고, ②세외수입 1억 5,100만원과 ③국고보조금등 8억 6,600만원을 증액, ④내부거래 △2억 800만원 감액을 세입예산에 조정 요청한 것임

1) 검토보고서는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검토함에 따라 예산안의 표시단위와 차이가 있음

-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2,927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것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해 증·감 조정을 요청한 것임

〈표 2-2〉 세입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45,368,868	100.0	44,244,927	100.0	1,123,940	100.0
	지 방 세 수 입	23,095,574	50.9	23,095,574	52.2	-	-
	세 외 수 입	4,440,509	9.8	4,440,357	10.0	151	0.0
	경 상 적 세 외 수 입	3,315,120	7.3	3,315,118	7.5	1	0.0
	임 시 적 세 외 수 입	655,780	1.4	655,630	1.5	150	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69,608	1.0	469,608	1.1	-	-
	지 방 교 부 세	205,738	0.5	205,738	0.5	-	-
	보 조 금	8,012,787	17.7	8,003,890	18.1	8,896	0.1
	국 고 보 조 금 등	8,012,787	17.7	8,003,890	18.1	8,896	0.1
	시·도비보조금등	-	-	-	-	-	-
	지 방 채	1,708,895	3.8	1,708,895	3.9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905,363	17.4	6,790,471	15.3	1,114,892	16.4
	보 전 수 입 등	1,240,614	2.7	410,273	0.9	830,340	202.4
	내 부 거 래	6,664,749	14.7	6,380,197	14.4	284,551	4.5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총괄표, p.8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44조 2,449억 2,700만원)보다 2.5%, 1조 1,239억 4,000만원 증액 편성요청한 바,

- **일반회계**의 경우, 8,311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요청한 것으로서 복지정책실 소관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1,930억원), 도시교통실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 전출금**(1,260억원),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1,200억원), 안전총괄실 소관 **재난관리기금 적립**(1,071억원), 도시교통실 소관 **서울교통공사 서비스 개선**(1,000억원), 도시교통실 소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1,000억원)과 국고보조금 반환 등 재무활동을 포함하여 27개 실·국·본부, 158개 세부사업에 대해 증·감 조정을 요청한 것임
- **특별회계**의 경우,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기타특별회계의 40개 세부사업에 대해 총 2,927억 9,000만원을 증·감 편성요청한 것임

〈표 2-3〉 세출총괄표(기능별)

(단위 : 백만원, %)

분 야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액	증 감 륜
	예 산 액	구 성 비	예 산 액	구 성 비		
총 계	45,368,868	100.00	44,244,927	100.00	1,123,940	2.54
일반공공행정	7,657,069	16.88	7,542,604	17.05	114,464	1.52
공공질서및안전	1,631,824	3.60	1,522,139	3.44	109,685	7.21
교육	4,280,263	9.43	4,277,021	9.67	3,242	0.08
문화및관광	826,709	1.82	817,263	1.85	9,445	1.16
환경	2,119,829	4.67	2,112,935	4.78	6,893	0.33
사회복지	16,215,176	35.74	15,953,659	36.06	261,517	1.64
보건	703,687	1.55	695,086	1.57	8,600	1.24
농림해양수산	99,885	0.22	98,717	0.22	1,167	1.1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750,689	1.65	709,353	1.60	41,336	5.83
교통및물류	6,149,029	13.55	5,636,941	12.74	512,088	9.08
국토및지역개발	2,717,689	5.99	2,662,360	6.02	55,328	2.08
과학기술	1,843	0.00	1,843	0.00	-	-
예비비	143,949	0.32	143,937	0.33	11	0.01
기타	2,071,222	4.57	2,071,063	4.68	159	0.01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총괄표중 기능별, p.9~11

Ⅲ . 세입예산 관련 검토

1.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처리

1) 순세계잉여금 등에 대한 세입처리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재원은 '2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될 순세계잉여금중 7,005억 5,000만원을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 관련 법령에 의하면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지난 '21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검사조차 시작되지 않은 3월 현재, 추경안에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2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될 세계잉여금중 ①조정교부금 941억 500만원을 법정잉여금으로 세입 편성요청한 것으로,
 - 관련 법령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를 일반회계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입하도록 정하고 있어 '2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될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우선 반영하고자 법정잉여금중 ②도시개발특별회계전출(재산세 도시지역분) 356억 8,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2)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중 세외수입은 기정예산(1조 8,023억 3,800만원)보다 1억 5,100만원 증액 조정 요청한 것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이 발생되어 기타이자수입 141만 2,000원을 세입조치 하고자 증액 편성요청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이 발생되어 1억 5,000만원을 세입조치 하고자 증액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3) 국고보조금등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 등**(511)의 경우, 기정예산(5조 8,502억 6,600만원) 보다 0.01%, 8억 6,600만원 증액된 5조 8,511억 3,3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국고보조금**(511-01)의 경우, 기정예산(5조 5,512억 8,200만원)보다 5억 500만원 증액 요청한 바,
 - 국비 변경에 따라 **의료지원차량 구입비**(1억 6,100만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총원**(1억 2,300만원),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8,800만원)등을 위한 세입예산액을 증액한 것이며, 정부추경에 따라 **선별진료소 활동비 지원**(18억 600만원),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보조)**(4억 300만원) 등을 위한 세입예산액 34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요청하고,
 - 국비 감액통보에 따라 **시립은혜로운집 운영보조**(△3억 6,000만원), **서울정신요양원 운영보조**(△25억 6,100만원) 2개 사업에 대해 △29억 2,100만원을 감액 편성요청한 것임
- 아울러 중앙정부의 **기금**(511-03)의 경우, 4개 사업에 대해 증·감 조정하여 기정예산(2,611억 3,700만원)보다 0.14%, 3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3-1〉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세입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국 고 보 조 금 등	5,850,266	866	5,851,133	
국 고 보 조 금	5,551,282	505	5,551,7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88 ○아동보호전담요원 총원 123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보조) 403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기후변화교육 75 ○시립영보정신요양원 운영보조 50 ○의료지원차량 구입비 161 ○선별진료소 활동비 지원 6 ○선별진료소 활동비 지원 1,800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33 ○건강한 시민을 위한 식생활교육 추진-바른식생활교육(국비) 5 ○가축방역-예방약품 지원(국비, 경상) 10 ○국고보조금 670 ○시립은혜로운집 운영보조 △360 ○서울정신요양원 운영보조 △2,561
기 금	261,137	361	261,4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37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50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281 ○예방접종 등록센터 △8

4)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중 전입금 세입예산은 기정예산(3,213억 4,700만원) 보다 △2억 800만원 감액 편성요청한 것으로,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전출되어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다함께돌봄사업(학교돌봄터 인건비)**(△1억 4,000만원)과 **다함께돌봄사업(학교돌봄터 기타운영비)**(△6,800만원)를 세입예산중 감액 편성요청한 것임

〈표 3-2〉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추경 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세 외 수 입	1,802,338	151	1,802,489	
경 상 적 세 외 수 입 (이 자 수 입)	1,323,612	1	1,323,613	1
기 타 이 자 수 입	1,323,612	1	1,323,613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이자수입 1
임 시 적 세 외 수 입 (보 조 금 반 환 수 입)	470,849	150	470,999	150
시·도비보조금등 반 환 수 입	470,849	150	470,999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집행잔액 150
보 조 금	5,850,266	866	5,851,133	
국 고 보 조 금 등 (국 고 보 조 금 등)	5,850,266	866	5,851,133	
국 고 보 조 금	5,551,282	505	5,551,788	◦회계연도중 증·감교부 505
기 금	261,137	361	261,498	◦정부 기금사업 증감 교부 361
보 전 수 입 등 및 내 부 거 래	411,430	830,131	1,241,562	
보 전 수 입 등 (잉 여 금)	90,082	830,131	920,423	830,131
순 세 계 잉 여 금	0	700,550	700,550	◦순세계잉여금 700,550
법 정 잉 여 금	0	129,789	129,789	◦법정잉여금(조정교부금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전 출(재산세도시지역분)) 129,789
내 부 거 래 (전 입 금)	321,347	△208	321,139	△208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전 입 금	321,347	△208	321,139	◦다함께돌봄사업 (학교 돌봄터 인건비 및 기 탁운영비) △208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구성

2.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처리

-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공기업특별회계인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해 증·감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서 기정예산(12조 8,795억 7,900만원)보다 2.3%, 2,927억 9,000만원 증액된 13조 1,723억 6,900만원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표 3-3〉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추경 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특별회계	12,879,579	292,790	13,172,369	
공기업특별회계	1,683,407	158	1,683,566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65,407	158	865,566	○일반회계지원금 158
기타특별회계	11,196,171	292,631	11,488,803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1,780,063	121,881	1,901,944	○국고보조금 1,880 ○기타회계전입금 120,001
교통사업계 특별회계	1,599,337	121,300	1,720,637	○국고보조금 15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000 ○기타회계전입금 126,030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520 ○예수금수입 △12,400
주택사업계 특별회계	2,899,517	3,978	2,903,496	○기타회계전입금 6,878 ○예수금수입 △2,900
도시개발회계	1,784,130	36,684	1,820,814	○국고보조금 1,000 ○기타회계전입금 35,684
균형발전회계	144,011	8,787	152,799	○기타회계전입금 8,787

1) 국고보조금등에 대한 세입처리

- 국고보조금등에 대한 세입경정은 회계연도 개시이후 중앙정부가 당초 내시액을 증·감 변경통보 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임
- **국고보조금**의 경우, 3개 특별회계가 세입예산을 증액 편성요청한 바,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경우,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사업에 국비 18억 8,000만원이 증액 통보되어 기정예산(1,082억 2,700만원)보다 18억 8,000만원을 세입예산에 증액 편성요청한 것임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디지털물류시범도시 조성 지원** 사업에 국비 1억 5,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풍납토성 복원(토지보상)** 사업에 국비 10억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것임

〈표 3-4〉 특별회계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입처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08,227	1,880	110,107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1,880
교통사업특별회계	28,043	150	28,193	◦디지털물류시범도시 조성 지원 150
도시개발특별회계	80,547	1,000	81,547	◦풍납토성 복원(토지보상) 1,000

- 국고보조금등에 해당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의 경우, **교통사업특별회계중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에 50억원이 증액 통보됨에 따라 기정예산(238억 6,800만원)보다 50억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것임

〈표 3-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대한 세입처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입과목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 (안)	주요 증감 내역
교통사업 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3,868	5,000	28,868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인프라 구축 5,000

2) 보전수입·내부거래 조정에 따른 세입경정

-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5개의 기타특별회계가 보전수입·내부거래에 대한 세입예산을 경정요청한 바,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저소득 한부모가정 하수도감면을 위해 **일반회계지원금** 1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것임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내부거래중 **기타회계전입금**을 기정예산(3,616억 3,500만원)보다 1,200억 100만원 증액한 4,816억 3,600만원으로 증액 편성요청하고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내부거래 세입예산을 기정예산(1조 509억 4,000만원)보다 1,161억 5,000만원 증액 편성요청한 것으로 **기타회계전입금**(1,260억 3,000만원)과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25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예수금수입**을 △124억원 감액 조정요청한 것임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내부거래 세입예산을 기정예산(1조 1,116억 7,300만원)보다 39억 7,800만원 증액 편성요청한 것으로 **기타회계전입금**(68억 7,800만원)을 증액조정하고, **예수금수입**을 △29억원 감액 조정요청한 것임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내부거래중 **기타회계전입금**을 기정예산(1조 4,061억 1,200만원)보다 356억 8,400만원을 증액한 1조 4,417억 9,600만원으로

로 증액 편성요청한 것임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내부거래중 **기타회계전입금**을 기정예산(1,083억 500만원)보다 87억 8,700만원을 증액한 1,170억 9,300만원으로 증액 편성요청한 것임

IV. 세출예산 관련 검토

1. 추경예산안의 특징

- 서울시가 지난 3월 17일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해 198개 사업을 증·감 조정 요청한 것으로
 - ①사업별설명서 작성이 생략되는 국고보조금 반환 등의 내부거래와 재무활동에 대해 증액요청한 13개 세부사업 외에도 ②신규사업 32개, ③본예산 심사시 감액된 사업에 대해 증액편성한 사업 24개, ④기정예산보다 증액 편성한 사업 98개, ⑤국비 변경에 따라 국비나 시비 조정이 필요한 21개 세부사업과 ⑥세출재원조정 등을 위해 감액요청한 10개 세부사업 등으로 검토됨
-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에는 관련 조례 중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대한 별도 규정을 지난 '99년도 3월, 동 시행규칙 제정 당시부터 적용한 것으로 사료됨
 - 동 시행규칙중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증액요청된 세부사업중 ⑤국비 변경에 따라 국비나 시비 조정이 필요한 21개 세부사업과 ①국고보조금 반환 등을 위해 증액요청한 13개 세부사업, ⑥세출재원조정 등을 위해 감액요청한 10개 세부사업은 추경안 편성 취지에 부합되는 사례로 사료됨
 - 다만, 회계연도 개시이후 이제 막 1분기가 경과된 시점임을 고려한다면, 추경안중 증액 요청된 중소기업인지원, 감염병 관련 긴급지원 등을 제외하고, 추경안을 통해 기정예산보다 증액 요청할 만큼 극적인 변수가 있다고 수긍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금번 추경안은 세입예산중 결산전 순세계잉여금중 일부(7,005억 원)를 재원으로 하는 바,
 - 관련 법령은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 서울시가 2021회계연도 결산 이전인 현시점에 순세계잉여금중 일부를 세입예산에 이입하여 추경안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은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라 할 것이나 제출된 추경안중 노면포장, 숲길조성, 다회용컵사용, 이벤트성 행사운영비 등의 편성 사례가 재원의 한정성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추진할 만큼 시급한 사안에 해당되는지 관련 조례가 정한 예산요구기관 즉, 사업부서로부터 입증에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따라서 중·소상공인지원, 감염병 긴급대응, 법정경비정산 등 추경안 편성 취지에 이견이 없는 사안을 제외하고, 금번 임시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이 관련 시행규칙을 준수한 사안인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4-1〉 내부거래 등을 위한 증액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주1)}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도 시 교 통 실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교통관리계정) 전출금	0	126,030	126,03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 시 철 도 건 설 사 업 특 별 회 계 전 출 금	361,635	120,001	481,636
균 형 발 전 본 부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법 정 전 출 금	1,406,112	35,684	1,441,796
기 획 조 정 실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	108,305	8,787	117,093
주 택 정 책 실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일반전출금 (국민계정)	120,500	6,878	127,378
공공개발기획단	국 고 보 조 금 반 환	0	3,586	3,586
안 전 총 괄 실	지 방 채 증 권 이 자 상 환 (재난관리기금)	6,333	2,585	8,918
경 제 정 책 실	국 고 보 조 금 반 환	34	1,034	1,068
평 생 교 육 국	국 고 보 조 금 반 환	0	51	51
문 화 본 부	국 고 보 조 금 반 환	0	41	41
평 생 교 육 국	국 고 보 조 금 반 환	0	34	34
재 무 국	공유재산 매각수입 반환금	15,430	32	15,462
서울역사박물관	국 고 보 조 금 반 환	0	3	3

※ 주1) 내부거래에 해당되나 사업별설명서가 제출된

①복지정책실 소관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증 1,930억)

②안전총괄실 소관 재난관리기금 적립(증 1,071억원)

③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증 49억원)은

<표 4-4> 기정예산보다 증액편성 요청한 사업 현황에 포함시킴

〈표 4-2A〉 신규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여성가족정책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0	10,028	10,028
경제정책실	캠퍼스 스타운형 취업사관학교 추진	0	3,000	3,000
시민건강국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 개선	0	2,400	2,400
경제정책실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0	2,000	2,000
안전총괄실	외발산 지하차도 보수	0	1,846	1,846
관광체육국	2022년 제26차 ANOC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총회개최	0	1,300	1,300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서울 경영 위기 소상공인 지원	0	900	900
시민건강국	어린이집 방문 간호사 서비스 지원	0	775	775
경제정책실	로봇 아카데미 운영	0	700	700
기후환경본부	AIoT 기반 대기오염수인프라 구축 (국가직접지원)	0	584	584
푸른도시국	초록길 구축 기본계획 수립	0	500	500
"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	0	500	500
경제정책실	청년 일자리 매칭 강화 전담창구 운영	0	400	400
푸른도시국	공원 재해 예방 사업	0	394	394
"	서울둘레길 확대 기본계획 수립	0	350	350
안전총괄실	공단 IC 보수 공사	0	294	294
복지정책실	스마트플러그 지원	0	220	220
경제정책실	G밸리 IoT 아카데미 운영	0	210	210

〈표 4-2B〉 신규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문화본부	시민힐링프로그램 및 시설물 개발	0	200	200
“	박물관 개관 10주년 문화행사 운영	0	200	200
도시계획국	간선도로 입체화 연계 중랑천 일대 공간 구상	0	200	200
푸른도시국	세대공감 미래 스마트공원 기본계획 수립	0	200	20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운영 시스템 확대 구축	0	162	162
여성가족정책실	전출금 (한부모가족 하수도요금 감면)	0	158	158
문화본부	시민휴식공간 조성	0	100	100
관광체육국	서울형 스포츠산업 육성지원	0	100	100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보호환경 개선 및 학대 예방 강화	0	93	93
복지정책실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0	85	85
시민건강국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확충	0	83	83
문화본부	미디어아트 빛예술 정책 기반 조성	0	50	50
시민건강국	코로나19 대응 체계 구축	0	10	10

〈표 4-3A〉 본예산 감액사업에 대해 증액요청한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세부사업	예산안 ①	의회감액 ②	기정예산 ③	증액요청 ④	추경안 ⑤	예산안 감액대비 추경증액요청비 ⑥=④/②
1인규특별채추진단	골목길 스마트보안 등 설 치 추 진	2,998	△1,038	1,960	1,470	3,430	141.6
문 화 본 부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42,296	△1,376	40,920	1,450	42,370	105.4
미래청년기획단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15,250	△7,500	7,750	7,750	15,550	103.3
관 광 체 육 국	야 간 관 광 활 성 화 지 원 사 업	200	△200	0	200	200	100.0
주 택 정 책 실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 설 추 진	4,083	△3,978	105	3,978	4,083	100.0
도 시 계 획 국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 강 변 공 간 구 상	600	△300	300	300	600	100.0
재 무 국	한국 지방세 연구원 법 정 출 연 금	5,005	△2,369	2,636	2,368	5,005	100.0
물순환안전국	하천 준설 및 시설물 유 지 관 리	2,000	△800	1,200	800	2,000	100.0
여성가족정책실	공 동 육 아 방 공 동 육 아 활 성 화	2,373	△585	1,788	585	2,373	100.0
관 광 체 육 국	의 료 관 광 활 성 화	1,027	△90	937	90	1,027	100.0
여성가족정책실	우리동네 보육반장 등 공 동 육 아 지 원	1,575	△95	1,480	95	1,575	100.0
평 생 교 육 국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	3,502	△3,502	0	3,242	3,242	92.6
여성가족정책실	여성능력개발원 운영	5,490	△650	4,840	600	5,440	92.3
미래청년기획단	청 년 의 건 강 한 재 정 출 발 지 원 (영 테 크)	1,550	△775	775	675	1,450	87.1
물순환안전국	홍 제 천 역 사 문 화 명 소 조 성	1,380	△1,380	0	800	800	58.0
스마트도시정책관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8,804	△1,456	7,348	693	8,041	47.6
1인규특별채추진단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2,765	△1,814	951	863	1,814	47.6
물순환안전국	도림천 상권활성화를 위한 수 변 인 프 라 조 성	1,380	△1,380	0	600	600	43.5

〈표 4-3B〉 본예산 감액사업에 대해 증액요청한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세부사업	예산안 ①	의회감액 ②	기정예산 ③	증액요청 ④	추경안 ⑤	예산안 감액대비 추경증액요청비 ⑥=④/②
물순환안전국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조성	1,640	△1,640	0	700	700	42.7
경제정책실	뷰티도시서울 추진	4,350	△2,250	2,100	880	2,980	39.1
물순환안전국	덕수궁 돌담길 옛물길 조성사업	120	△120	0	30	30	25.0
문화본부	미디어아트 서울 설치운영	1,030	△880	150	200	350	22.7
여성가족정책실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69,818	△3,470	66,348	554	66,903	16.0
안전총괄실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지원	43,700	△35,000	8,700	4,608	13,308	13.2

〈표 4-4A〉 기정예산 보다 증액편성 요청한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기정예산 대비 증액요청비
경제정책실	드론산업활성화	50	500	550	1,000.0
복지정책실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적립	62,197	193,000	255,197	310.3
기후환경본부	민간제로웨이스트 매장확산지원	125	375	500	300.0
시민건강국	MERS, 신종플루 등 신종감염병대책(자체)	125	270	395	216.0
주택정책실	서울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구축	232	489	721	210.8
문화본부	서울역사편찬원 청사유지운영	31	65	96	209.7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온라인 판로개척지원	1,683	3,070	4,753	182.4
한강사업본부	한강공원위탁체육시설 유지관리	286	500	786	174.8
문화본부	무형문화재전수시설	538	724	1,262	134.6
주택정책실	계획적소규모주택 정비사업추진지원	2,200	2,900	5,100	131.8
도시계획국	신속통합기획수립및운영	2,310	2,982	5,292	129.1
시민건강국	어린이병원진료서비스 수준관리	462	561	1,023	121.4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273	330	603	120.9
문화본부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정책기반조성	674	751	1,425	111.4
도시교통실	서울교통공사서비스개선	100,000	100,000	200,000	100.0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개선	900	840	1,740	93.3
여성가족정책실	아동학대예방및대응추진	155	144	299	92.9

〈표 4-4B〉 기정예산 보다 증액편성 요청한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기정예산 대비 증액요청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8,968	7,800	16,768	87.0
도시교통실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 지원 (시비보조)	7,875	5,304	13,179	67.4
안전총괄실	중차량노선 시설물 성능개선	5,990	4,000	9,990	66.8
기후환경본부	다회용 컵 사용 시스템 구축사업	1,500	1,000	2,500	66.7
푸른도시국	서울 아래숲길 조성	300	200	500	66.7
안전총괄실	도로유지 일상관리	2,709	1,800	4,509	66.4
문화본부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운영	432	268	700	62.0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810	500	1,310	61.7
안전총괄실	금호로 확장	500	300	800	60.0
"	도림천복개(좌안) 보수	500	300	800	60.0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168	99	267	58.9
경제정책실	패션산업 기반 확충	3,104	1,800	4,904	58.0
자치경찰위원회	서울시 자치경찰제 홍보	162	85	247	52.5
안전총괄실	울곡로(창경궁앞)구조개선	9,500	4,523	14,023	47.6
복지정책실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시비)	412	179	591	43.4
문화본부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1,969	833	2,802	42.3
"	풍납토성 일대 도시재생 추진	242	100	342	41.3

〈표 4-4C〉 기정예산 보다 증액편성 요청한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기정예산 대비 증액요청비
시 민 건 강 국	감염병 정책연구 평가 및 대응 모 들 개 발	600	234	834	39.0
경 제 정 책 실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조성 및 운 영	7,713	3,000	10,713	38.9
도 시 교 통 실	마 을 버 스 서 비 스 개 선	25,850	10,000	35,850	38.7
경 제 정 책 실	홍릉일대 클러스터 조성	905	350	1,255	38.7
공공개발기획단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 원 화 사 업	4,100	1,462	5,562	35.7
안 전 총 괄 실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교통개선분담금계정)	17,847	6,336	24,183	35.5
시 민 건 강 국	어린이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3,167	993	4,160	31.4
경 제 정 책 실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3,844	1,128	4,972	29.3
안 전 총 괄 실	재 난 관 리 기 금 적 립	365,924	107,100	473,024	29.3
시 민 건 강 국	서북병원 진료서비스 수준 관리	2,747	792	3,539	28.8
푸 른 도 시 국	서울로 7017 안전난간비 재 정	2,240	643	2,883	28.7
”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 (전 환 사 업)	752	200	952	26.6
도 시 교 통 실	시 내 버 스 서 비 스 개 선	383,810	100,000	483,810	26.1
시 민 건 강 국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 사 (자 체)	813	204	1,017	25.1
”	반려견 놀이터 조성(전환사업)	200	50	250	25.0
안 전 총 괄 실	개 봉 철 도 고 가 바 닥 판 교 체 정 비 공 사	3,000	742	3,742	24.7
기후환경본부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1,200	275	1,475	22.9

〈표 4-4D〉 기정예산 보다 증액편성 요청한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기정예산 대비 증액요청비
푸른도시국	남산 및 산하 공원 시설 물보수정비	2,743	550	3,293	20.1
물순환안전국	양평 1유수지 CSOS 저류조 운영	551	100	651	18.1
경제정책실	서울 시민 안심 일자리	57,228	10,000	67,228	17.5
푸른도시국	공원편익(판매)시설유지 및 보수	297	50	347	16.8
도시교통실	가공배전선지중화	26,835	4,463	31,298	16.6
"	비강남지역주택가공동주차장건설확충	5,456	877	6,333	16.1
푸른도시국	문화비축기지유지관리	1,130	180	1,310	15.9
"	푸른수목원운영관리	1,493	230	1,723	15.4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서울신용보증재단출연	65,900	10,000	75,900	15.2
문화본부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주변 성벽위험구간해체복원	2,255	338	2,593	15.0
기후환경본부	차량정비센터 시설유지보수	682	100	782	14.7
도시기반시설본부	진접선(4호선연장)차량기지건설	87,162	12,062	99,224	13.8
푸른도시국	선유도공원유지관리	751	100	851	13.3
문화본부	박물관홍보및문화행사운영	161	20	181	12.4
경제정책실	서울형 뉴딜일자리	76,526	8,719	85,245	11.4
푸른도시국	동물원유지관리	2,307	245	2,552	10.6
시민건강국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운영	3,230	320	3,550	9.9

〈표 4-4E〉 기정예산 보다 증액편성 요청한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기정예산 대비 증액요청비
관광체육국	생활체육대회 운영 및 생활체육진흥	3,340	320	3,660	9.6
도시교통실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11,649	1,108	12,757	9.5
시민건강국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탁운영	10,165	966	11,131	9.5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위탁운영	11,417	966	12,383	8.5
문화본부	서울 남산국악당 운영	2,020	162	2,182	8.0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61,976	4,900	66,876	7.9
경제정책실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1,036	80	1,116	7.7
복지정책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787	134	1,921	7.5
서울역사박물관	박물관 유지 운영	2,046	150	2,196	7.3
시민건강국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14,077	966	15,043	6.9
푸른도시국	산림내이용시설 정비 및 관리	1,566	100	1,666	6.4
"	서울숲공원 유지 관리	3,420	200	3,620	5.8
시민건강국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위탁 운영	18,652	966	19,618	5.2
푸른도시국	월드컵공원 유지 관리	7,364	350	7,714	4.8
"	서울대공원 산업안전보건관 운영	334	15	349	4.5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서울품물시장 활성화	2,856	120	2,976	4.2
복지정책실	보람 일자리 사업	18,426	634	19,060	3.4

〈표 4-4F〉 기정예산 보다 증액편성 요청한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세부사업 ^{주1)}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기정예산 대비 증액요청비
관광체육국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48,071	1,500	49,571	3.1
문화본부	종교계와 함께 하는 문화 행사 지원	1,622	50	1,672	3.1
복지정책실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3,602	106	3,708	2.9
기후환경본부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SR센터) 운영효율화	3,034	80	3,114	2.6
행정국	조정교부금	3,812,308	94,105	3,906,413	2.5
여성가족정책실	여성발전센터 운영	6,286	150	6,436	2.4
도시교통실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89,354	1,750	91,104	2.0
"	지하철 9호선 2·3단계구간 위탁 운영 관리	19,433	261	19,694	1.3
기후환경본부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 운영 관리 및 운영	4,471	50	4,521	1.1
시민건강국	신종감염병 대응 생활 방역 체계 구축	2,572	18	2,590	0.7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관 운영	89,455	57	89,512	0.1

※ 주1)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예비비 (증 1,100만원) 제외

〈표 4-5A〉 국비 변경에 따라 국비 또는 시비 조정이 필요한 사업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도 시 교 통 실	어 린 이 안 전 영 상 정 보 인 프 라 구 축	(x12,250) 18,269	(x5,000) 11,000	(x17,250) 29,269
복 지 정 책 실	장 애 인 활 동 지 원 - 활 동 지 원 급 여	(x242,947) 455,164	(x) 9,325	(x242,947) 464,490
여 성 가 족 정 책 실	국 공 립 어 린 이 집 확 충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x6,597) 15,524	(x) 8,753	(x6,597) 24,277
도 시 기 반 시 설 본 부	도 시 철 도 9 호 선 4 단 계 건 설	(x6,800) 15,000	(x1,880) 6,700	(x8,680) 21,700
시 민 건 강 국	선 별 진 료 소 검 사 인 력 활 동 비 지 원	(x905) 1,810	(x1,806) 3,612	(x2,711) 5,422
문 화 본 부	풍 납 토 성 복 원 (토 지 보 상)	(x65,280) 93,257	(x1,000) 1,428	(x66,280) 94,685
주 택 정 책 실	주 거 취 약 계 층 주 거 상 향 지 원	(x) 0	(x670) 1,292	(x670) 1,292
복 지 정 책 실	코 로 나 19 돌 봄 한 시 지 원	(x) 0	(x403) 675	(x403) 675
여 성 가 족 정 책 실	요 보 호 아 동 그 룹 홈 (공 동 생 활 가 정) 운 영 지 원	(x2,811) 10,516	(x) 672	(x2,811) 11,188
노 동 공 정 상 생 정 책 관	전 통 시 장 노 후 전 선 정 비 사 업	(x1,547) 2,139	(x281) 398	(x1,828) 2,538
도 시 교 통 실	디 지 털 물 류 시 범 도 시 조 성 지 원	(x) 0	(x150) 300	(x150) 300
여 성 가 족 정 책 실	아 동 보 호 전 담 요 원 충 원	(x1,315) 2,631	(x123) 247	(x1,439) 2,878
시 민 건 강 국	재 난 거 점 병 원 의 료 지 원 차 량	(x) 0	(x161) 230	(x161) 230
여 성 가 족 정 책 실	여 성 새 로 일 하 기 센 터 지 정 운 영	(x11,184) 16,057	(x88) 195	(x11,273) 16,252
”	청 소 년 방 과 후 아 카 데 미 운 영 지 원	(x1,157) 3,460	(x50) 151	(x1,208) 3,612
기 후 환 경 본 부	탄 소 중 립 생 활 실 천 운 동 - 기 후 변 화 교 육	(x45) 90	(x75) 150	(x120) 240

〈표 4-5B〉 국비 변경에 따라 국비 또는 시비 조정이 필요한 사업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여성가족정책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x773) 2,459	(x) 109	(x773) 2,569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x482) 957	(x37) 74	(x519) 1,031
시민건강국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구축 (국 비)	(x1,225) 1,974	(x33) 44	(x1,259) 2,018
"	가축방역 - 예방약품 등 지원 (국 비 , 경 상)	(x83) 166	(x10) 21	(x93) 187
"	건강한 시민을 위한 식생활교육 추진-바른식생활교육지원(국비)	(x155) 310	(x5) 10	(x160) 320

〈표 4-6〉 세출재원조정 등을 위해 감액편성한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감액	추경안
도 시 교 통 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교통 개선 분담금 계정)	48,300	△6,300	42,000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주 차 장 관 리 계 정)	223,500	△6,100	217,400
시 민 건 강 국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국비)	(x7,309) 14,985	(x△2,872) △5,744	(x4,437) 9,241
주 택 정 책 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도정)	336,500	△2,900	333,600
관 광 체 육 국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x425) 19,871	(x) △320	(x425) 19,551
도 시 교 통 실	예비비 (주차장 관리 계정)	326	△81	245
"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개선분담금계정 (일 반 예 비 비)	109	△36	73
여 성 가 족 정 책 실	다 함 께 돌 봄 사 업 (학교돌봄터 기타운영비 지원)	(x162) 354	(x) △30	(x162) 324
시 민 건 강 국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x208) 452	(x△8) △17	(x200) 435
자 치 경 찰 위 원 회	기 본 경 비	42	△4	38

2. 예산총칙의 적정성

- 서울시가 제출한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은 '22년도 본 예산 심사시 의결('21.12)된 예산총칙중 세입·세출예산총액(제1조)과 일반회계 예비비(제7조), 명시이월 관련 사항(제5조)을 수정한 것으로,
 -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세입·세출에 대한 증·감편성을 요청함에 따라 예산총칙중 세입·세출예산총액과 일반회계 예비비를 연동하여 조정하고, 명시이월사업조서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예산총칙중 제1조 **세입·세출예산총액**의 경우에는 당초 44조 2,190억 4,800만원을 45조 3,688억 6,800만원으로 조정함
 - 기정예산(44조 2,449억 2,700만원)보다 1조 1,239억 4,000만원 증액된 45조 3,688억 6,800만원으로 세입·세출예산총액도 동일하게 조정함 것으로 판단됨

- 추경안을 통해 기정예산의 세출예산을 경정함에 따라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도, 본예산 심사시 ①일반예비비 1,190억 2,500만원과 ②목적예비비 200억원을 포함한 1,390억 2,500만원으로 확정하였으나, ①일반예비비는 당초(1,190억 2,500만원)보다 1,100만원 증액된 1,190억 3,700만원으로 조정함 것으로 확인됨
 - 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서 목적예비비의 경우에는 편성한도가 없으나, 일반예비비는 회계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여야 하는 바,
 - 제출된 추경안의 예산총칙중 일반회계 일반예비비(1,190억 3,700만원)는 일반회계 예산총액(32조 1,964억 9,900만원)의 0.3%에 해당되어 한도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추경안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1,390억 3,700만원)는 당초 본 예산 일반회계 예비비(1,390억 2,500만원)보다 0.008%, 1,100만원 증액된 것으로,
 -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예산액(32조 1,964억 9,900만원)가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액(31조 3,424억 5,900만원) 대비 2.7%, 8,540억 4,000만원 증액편성 요청한 것과 비교하면 예비비는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된 것으로 검토되나
 - 직전 회계연도의 경우,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1,509억 4,600만원) 중 59.5%, 897억 7,7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지출결정된 예비비중 867억 6,700만원을 실제 지출한 사례가 있어 추경안중 예비비 편성액은 과소편성으로 사료되지 않음

3. 법정경비 등의 정산

- 관련 법령등은 결산상 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법정 정산 후에 그 잉여금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정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서울시는 금번 추경안을 통해 '2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될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중 일부인 7,005억 5,000만원과 이른바 '법정경비'에 대한 정산이 필요한 세계잉여금중 일부인 1,297억 8,700만원을 우선 편성요청한 것임
- 추경안중 세입예산으로 편성 요청된 법정잉여금(1,297억 8,700만원)은 세출예산중 법정경비인 ①**조정교부금** 941억 500만원과 ②**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재산세도시지역분)** 356억 8,400만원으로
 - **조정교부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자 보통세의 22.6%를 자치구로 교부하는 것으로, 추경안을 통해 기정예산(3조 8,123억 800만원)보다 2.4%, 941억 500만원 증액된 3조 9,064억 1,300만원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 금번 추경예산안은 '21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보통세의 예산액과 결산액 차액의 일부를 자치구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른바 '우선 교부'하려는 취지로 사료됨
-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의 70%를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21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발생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잉여금중 356억 8,400만원을 우선 반영하려는 것임
 - 동 법정전출금은 추경안을 통해 기정예산(1조 4,061억 1,100만원)보다

2.5%, 356억 8,400만원 증액된 1조 4,417억 9,6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전출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예산중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세입조치 후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재산세 도시지역분 이른 바, 법정경비에 대한 정산은 ①도시개발특별회계(70%) 외에도 ②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정 10%, ③관련 조례에 따른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사업계정 10%, ④관련 법령에 따른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관리계정 10%로 전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 금번 추경안에는 '21회계연도의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결산상잉여금중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분에 대해서만 편성요청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편성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세입·세출에 대한 추경안 포함여부 또한 편성권으로 자치단체장(예산편성부서)이 결정할 사안이나
 - 재원이 동일함에도 특정회계에 한정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정산분을 선별 반영하는 것이 회계간 예산편성의 형평성과 재원활용의 시급성을 고려한 사안인지 예산편성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4. 실·본부·국별 세부사업 검토

1) 여성가족정책실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별설명서 p.33)

- 동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기정예산(155억 2,400만원)보다 56.3%, 87억 5,300만원 증액한 242억 7,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국·시비 매칭사업(국비 50:시비 50)임에도 국비가 변경내시 되지 않았으나 시비만을 증액하여 편성요청한 바,
- 사업부서는 ①'21년도 선정분에 대한 분할교부액 51억원과 ②'22년도 선정분에 대한 추가 소요 시비 36억 5,200만원으로 산출근거를 제출하였음

〈표 4-7〉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균형발전특별회계) 추경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A)	추경안 (B)	증액 (B - A)
계	(x6,597) 15,524	(x6,597) 24,277	(x-) 8,753
자치단체자본보조	(x6,597) 15,524	(x6,597) 24,277	(x-) 8,753

※ 자료근거 :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 금번 추경안의 소요예산중 ②'22년도 선정분에 대한 시비 36억 5,200만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원단가(167만 6,000원/㎡)가 서울시 지원단가(303만 3,000원/㎡)보다 낮아 추가 소요분을 편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 국비와 시비 지원기준의 상대적인 차이가 크다면 국비 증액을 요구할 필요가 있어 금번 추경안에 우선 편성되는 시비 36억 5,200만원에 대한 차후 국비보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럼에도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중 증감사유를 “복지부-서울시 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단가 차이에 따른 시비증액”으로 기재하고 있고, 실제 증액 편성요청한 87억 5,300만원중 ①’21년도 선정분에 대한 분할교부액(51억원)이 더 큰 규모인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사업별설명서 작성시 사전관계가 누락 및 왜곡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별설명서 p.37)

- 동 사업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지급하고자 사회복지사업보조 98억 2,300만원을 포함한 100억 2,8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법령 또는 조례에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동 사업을 위한 관련 조례가 지난 1월, 시의회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3월 30일 원안가결한 것으로 확인됨

〈표 4-8〉 임신부 교통비 지원 추경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10,028					
사	무	관	리	비	80				
	○ 임신부 교통비 지원 홍보비			80					
사	회	복	지	사	업	보	조	9,823	
	○ 임신부 교통비 지원 - 60,000원*39,380명*신청자별 사용개월수			9,666					
	○ 지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시스템구축비 127,752천원, 유지보수비 30,000천원			157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125
	○ 자치구 사업 홍보 및 관리 등 - 5,000,000원*25개구			125					

- 또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시 ①유사사업을 시행중인 광진구 및 은평구 등 자치구와 사업 통폐합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와 함께 중복지급 되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사실이 있고
- ②'22년부터 보건복지부 주관의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재정상황과 출산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어 소요예산의 규모조정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별설명서 p.45)

- 동 사업은 기정예산 2억 7,300만원(국비 1억 3,600만원 포함)보다 3억 2,900만원(전액 시비)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의 인력과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마포구 백범로 소재 기존 사무공간(115 m^2)만으로는 공간이 부족하여 은평구 백련산로 소재 꿈나무마을 연두꿈터의 지상1층 유휴공간(393.26 m^2)을 사무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22년도 하반기 중 이전하고자 시설비(3억 2,900만원)를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행정안전부 기준에는 세부사업 설정시 국고보조사업을 포함한 “보조재원 포함사업과 자체재원사업을 구분”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동 세부사업의 경우, 당초 편성된 '22년도 본예산은 국비와 시비를 50:50의 비율로 매칭하여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7개소)에 대한 개보수 및 장비보강을 추진하고자 2억 7,300만원(국비 1억 3,600만원, 시비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 금번 추경안의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개보수 등을 국·시비 매칭(50:50)으로 추진하는 기존의 국고보조사업(**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과는 달리, 서울시가 전액 시비(3억 2,900만원)로 아동자립지원사업단(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사무공간을 마련하고자 리모델링 공사비를 편성한 것으로
- 자체재원으로 리모델링 공사비(3억 2,900만원)를 편성할 경우, 기존 국비매칭 사업과는 별도로 세부사업을 분리하여야 함에도 기존의 국고보조사업(**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증액하여 단일 세부사업으로 편성요청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의 훈령을 준수하기 위해 당초 국·시비 매칭사업과 시비사업(리모델링비)을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4-9〉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추경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산출내역	비고
계	(x136) 273	(x-) 329	(x136) 603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x136) 273	-	(x136) 273		기존 국고보조사업 (국비와 시비를 50:50의 비율로 매칭)
시설비	-	(x-) 329	(x-) 329	○자립지원 전담 기관 개보수 329	신규 자체재원사업 (전액 시비)

□ 전출금(한부모가족 하수도요금 감면) (사업별설명서 p.67)

○ 동 사업은 일반회계중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억 5,8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으로,

- '21년 7월,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2년 4월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4,401가구)에게 하수도요금을 매월 10톤(m^3)까지 감면하기 위해 요금 감면액을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보전하고자 전출금(1억 5,8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4-10〉 전출금(한부모가족 하수도요금 감면) 추경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산출내역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	158	158	○한부모가족 하수도사용료 감면분에 대한 보전 - $10m^3 \times 400\text{원} \times 9\text{개월}$ $\times 4,401\text{가구}$ 158

○ 우리 시의회는 한부모가족의 월 평균소득이 전체가구 평균의 57% 수준으로 열악한 실정임을 고려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중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에 대해 하수도요금 감면을 실시하고자 '21년 5월, 감면근거를 신설하는 조례를 발의하고, '21년 7월, 동 조례안을 '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음

○ 그러나 관련 법령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기업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고,

- 서울시 조례는 일반회계 등에 의하여 경비 보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감면이 실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등에서 감면보전분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나

- '21년 9월, 조례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감면보전분을 '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22년 1월부터 감면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22년도 본예산에 감면보전분이 편성되지 않음에 따라 '22년 3월 현재까지 한부모가족에 대한 감면이 유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우리 시의회가 '21년 7월, 관련 조례를 의결하며 서울시의 준비기간까지 반영하여 '22년 1월부터 감면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한 것임에도

- 서울시가 조례개정의 취지에 따라 감면보전분을 '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어야 하나 금번 제1회 추경안에 관련 보전액을 편성한 것은 조례개정을 통해 마땅히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서울시가 지연시킨 결과이며 의회의 의결취지를 소홀히 하여 시민의 편익을 감소시킨 편성사례로서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미래청년기획단

□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사업별설명서 p.139)

- 동 사업은 청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만 19세부터 24세까지의 서울시 거주청년(75,000명)에 대해 1인당 연간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 이용실적에 비례하여 실제 사용액의 20%를 교통마일리지로 지급하고자 사무관리비 2억 5,000만원과 기타보상금 75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11〉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총			계	7,750		
	사	무	관	리	비	250
						50
						200
	기	타	보	상	금	7,500
						75,000

- 추경안중 증액요청된 내역은 이미 '22년 본예산 심사시 감액된 △75억원 (기타보상금) 보다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77억 5,000만원(기타보상금 75억원, 사무관리비 2억 5,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나, '22년도 본예산 제출 당시 제기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제도 신설 협의와 관련 조례에 근거 마련 등의 사전 절차는 이행된 것으로 확인됨

〈표 4-12〉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추경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본 예 산	기 정 예 산 (A)	추 경 안 (B)	증 액 (B - A)
계	15,250	7,750	15,500	7,750
사 무 관 리 비	250	250	500	250
기 타 보 상 금	15,000	7,500	15,000	7,500

※ 자료근거 :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르면 기타보상금은 ①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물품, ②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을 위해 편성하는 것인 바,

- '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도 청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실적에 비례하여 실제 사용액의 20%를 지원하는 것은 “반대급부적 경비” 또는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예산과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어 적정 예산과목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동 사업의 사업별설명서에는 ‘정책에서 소외되는 청년이 없도록 지원 규모를 기존 7만 5,000명에서 15만명으로 확대’ 하려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해당 연령의 청년 규모를 72만 5,000명으로 추계하면서도 이중 선착순으로 15만명의 청년에게 교통비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대상자의 20%에게만 선착순으로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사업 방식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경제정책실

□ 사무관리비의 편의적 편성

- 드론산업 활성화 (사업별설명서 p.149)
- 로봇 아카데미 운영 (사업별설명서 p.153)
- G밸리 IoT 아카데미 운영 (사업별설명서 p.196)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드론산업 활성화**의 경우, 편성 요청된 사무관리비(5억원)를 드론 인재 양성을 위해 드론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용역 방식으로 지출할 것으로 사업별 설명서와 추진계획에 기재하고 있음

〈표 4-13〉 드론산업 활성화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사	무	관	리	비	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 20,220,000원*3명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료 - 42,880,000원*5명 				2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재비, 장비 구매비, 임차료 및 사업추진비 				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비 - 8,800,000원*2회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경비 및 이윤, 부가세 				80

- **로봇 아카데미 운영**은 로봇 인재양성을 위해 사무관리비 7억원을 전문기관 용역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확인됨

〈표 4-14〉 로봇 아카데미 운영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사	무	관	리	비	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강생 교육비 - 6,800,000원*100명 				6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프로그램 자문 및 평가위원 수당 - 200,000원*7명*10회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 공고 및 포스터 제작 등 홍보비용 - 3,000,000*2회 				6

- **G밸리 IoT 아카데미 운영**의 경우에도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사무관리비(2억 1,000만원)를 IoT 분야 실무형 고급인재 양성과정에 지출할 계획으로 확인됨

〈표 4-15〉 G밸리 IoT 아카데미 운영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사	무	관	리	비	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비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너 홍보 4,100,000원*1개월*2회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플렛 제작 배포 4,500원*1,000매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터 제작 배포 2,355원*850매*2회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철 액자 홍보 2,650원*1,000매*2회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비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인쇄비 10천원*10권*2회 				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회의, 제안서평가위원회 등 참석수당 200천원*7명*2회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 				1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강사료 76,800천원 행정인력 40,000천원) 				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훈련장비 대여·구입비 24,000천원, 온라인 강의 촬영비 3,000천원, 재료비(교재 인쇄비 등) 2,000천원)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관리비(일반관리비(5%), 이윤(10%), 부가세(10%)) 				39

- 사무관리비는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지출하는 예산과목이나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일반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서

- 일반운영비에 포함된 사무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는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의 경우에도 “행정활동수행을 위한 경상적 활동의 범위에 속해야 할 것”으로 회신하고,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수수료, 방역수수료”로 예시 사례를 적시한 바 있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관리비는 ‘행정활동수행을 위한 경상적 활동’에 한정하여 편성·지출되어야 하는 예산과목으로 판단됨
- 추경안에 증액 요청한 ①**드론산업 활성화**의 교육과정 운영 용역(사무관리비 5억원), ②**로봇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사무관리비 7억원) 및 ③**G밸리 IoT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용역(사무관리비 2억 1,000만원)은 사무관리비를 통해 전문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려는 것이나,
- 행정안전부의 회신결과를 고려하면, 사무관리비로 편성 가능한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이미 지난 '22년도 예산안 심사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유사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음
- **드론산업 활성화**의 경우 '22년도 예산안 심사시, 정기 학술용역 심의결과 ('21년 9월) “부적정” 으로 결정된 사례가 있고,
-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학술용역심의 절차를 이행한 후 필요시 학술용역 예산을 추경을 통해 연구용역비로 편성할 것을 지적한 바 있으나 여전히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제출한 바,
 - 행정안전부의 현행 기준이 일반용역에 대한 세출과목을 따로 설정하고 있지 않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으로 사료되나 사무관리비의 편의적 편성을 개선하지 않은 것은 의회의 예산안 심사가 갖는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로 동일 편성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4-16〉 드론산업 활성화 추경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비고
계	50	500	550	
사무관리비	50	500	550	※기정예산 사무관리비(50백만원)는 컨설팅 용역(서울 드론 산업 육성 전략 수립을 위한 드론산업 실태조사) 예산임

- 또한, **드론산업 활성화**의 경우, 과업지시서에는 “드론 HW 및 SW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서울시 교육 훈련 체계 구축 방안”을 담고 있어 “서울 드론 산업 육성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 완료 이후 용역 결과에 따라 교육훈련 체계를 수립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뷰티도시 서울 추진** (사업별설명서 p.157)

- 동 사업은 뷰티 업계 활력 제고 및 유망 중소 뷰티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마케팅을 지원하고자 기정예산(21억 원)보다 8억 8,000만원을 증액한 29억 8,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17〉 뷰티도시 서울 추진 추경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역	예산안	
사	무	관	리	비	880
	○ 전문인력 양성 추진				380
	- 교육장 공간임대				200
	▷ 보증금 (50평 기준)				120
	▷ 월 임대료 및 관리비				80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80
	○ 유망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500
	- 패키지(포장용기) 제작지원				300
	- 미디어콘텐츠 제작지원				200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등의 임차료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은 **기타자본 이전**으로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추경안을 통해 편성요청한 사업예산중 월 임대료 및 관리비 8,000만원의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집행되어야 할 것이나, 보증금 1억 2,000만원의 경우에는 사무관리비가 아닌 **기타자본 이전** 편성하여 지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세출과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동 사업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가 '22년도 본예산 예비심사시 “뷰티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이 진행중이고, 그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① 뷰티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3억원), ②뷰티기업 컨설팅 지원(△2억원) 등을 감액 조정한 사례가 있음
 - 다만, 회계연도 개시 이후 지난 3월, 학술용역이 종료되어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나,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예비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소요예산의 승인 여부를 논의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복지정책실

□ 사전절차(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이행여부가 불명확한 사업

- 스마트플러그 지원 (사업별설명서 p.218)
- 보람일자리 사업 (사업별설명서 p.225)

○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소관 **스마트플러그 지원**은 2억 2,0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으로,

- 고독사 위험가구의 안전확인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전력량과 조도 변화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플러그(2,000개)를 지원하고, 일정 시간 전력량 및 조도 변화가 없다면 알림서비스를 전송하여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안부확인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자 **자치단체자본보조** 2억 2,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4-18〉 스마트플러그 지원 추경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산출내역
자치단체 자본보조	-	220	220	○고독사 위험가구 스마트플러그 지원 - 11만원 × 2,000개 220

○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소관 **보람일자리 사업**은 기정예산 184억 2,600만원보다 6억 3,4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 보람일자리 중 우리동네돌봄단을 당초(800명)보다 400명 추가된 1,200명으로 운영하여 단월별 관리대상가구 수를 경감하고, 보다 촘촘한 고독사 예방 모니터링을 추진하기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억 3,4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4-19〉 보람일자리 사업 추경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18,426	634	19,060	634
사무관리비	50	-	5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	-	6	
사회복지 사업보조	16,498	-	16,49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872	634	2,506	○참여자 활동비 616 - 22만원 × 400명 × 7개월 ○참여자 단체상해보험 12 - 3만원 × 400명 × 1회 ○참여자 교육실비 6 - 1만 5,000원 × 400명 × 1일

- 관련 법령은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스마트플러그 지원**의 경우, 자치단체자본보조 2억 2,0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이며 **보람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억 3,4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고 있어 예산편성에 앞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 해당됨
 - 그러나 사업별설명서에는 지난 3월 4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추경안과 관련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내역을 확인한 결과 **스마트플러그 지원**과 **보람일자리 사업**에 대한 심의결과가 확인되지 않아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사안으로 판단됨
- 사전절차 미이행과 관련하여 사업부서는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소관 **지역기반 복지공동체 구축**의 세부내역에 **스마트플러그 지원**과 **보람일자리 사업**을 포함시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는 의견이나

- **지역기반 복지공동체 구축**의 경우, 지난 3월 4일, 집중심의회가 아닌 일괄 심의를 받은 사업으로,
 - 일괄심의 대상사업은 지방보조금 심의당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실·본부·국명,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기정예산 및 추경예산이 포함된 사업 리스트(목록)만 제공되었을 뿐, 사업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일체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고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공된 자료에 명시되지 않고, 보고되지도 않은 사업내역(**스마트플러그 지원, 보람일자리 사업**)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안으로 사료됨
- 더욱이 행정안전부 기준에는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별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어
 - 사업부서가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은 사업(**지역기반 복지공동체 구축**)과 예산을 실제 편성요청한 사업(**스마트플러그 지원, 보람일자리 사업**)이 불일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의받은 사업별로 지방보조금을 편성하라는 행정안전부 기준을 위반한 결과일 수 있어 예규 준수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사실 확인은 물론 행정안전부에 서면으로 질의회신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표 4-20〉 지방보조금 심의내역과 추경안간 사업비교

(단위 : 백만원)

지방보조금 심의내역 중 지역기반 복지공동체 구축			추경안 중 스마트플러그 지원 및 보람일자리 사업			
복지정책실 내 부서명	통계목	기정예산에 대한 증액규모	복지정책실 내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기정예산에 대한 증액규모
계		3,165	계			854
지역돌봄 복지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165	지역돌봄 복지과	스마트플러그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220
			인생이모작 지원과	보람일자리 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34

- 따라서 동 사업의 경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은 있으나, 법정 사전절차(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어 사전절차 이행문제가 명확히 해소된 이후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절차적 요건이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문화본부

□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운영 (사업별설명서 p.304)

- 동 사업은 기정예산 4억 3,200만원보다 2억 6,7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 행사추진시 30회 내외의 자체 기획공연을 진행하기 위해 출연료 및 인건비(2억 100만원), 홍보비(1,000만원), 일반운영비(1,300만원)를 포함한 행사운영비(2억 6,700만원)를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4-21〉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운영 추경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산출내역	
행사운영비	432	267	700	○노들섬 특설무대 행사운영	267
				- 출연료, 인건비	201
				- 홍보비	10
				- 일반운영비(재료비 등)	13
				- 대행료, 부가세 등	43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행사성 사업은 관련 기준에 따라 ㉠ 예산편성 전까지 서울시 투자심사를 이행하여야 하고, ㉡투자심사가 이행된 경우라 하여도 사업부지가 변경되면 다시 심사(재심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음
 - 동 사업의 경우, ㉠당초 '21년 10월, 서울광장(중구 태평로 소재) 특설무대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투자심사를 이행하고, 본예산에 4억 3,200만원을 편성한 것이나,
 - ㉡사업부서는 '22년 1월, 선별진료소 설치·운영 등으로 '22년도에도 서울광장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행사 개최장소를 노들섬(용산구 양녕로 소

재) 잔디마당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나 관련 규칙에 따라 행사장소 변경시 투자심사(재심사)를 다시 이행하여야 함에도 법정 선결요건인 재심사(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으로 판단됨

○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사업명칭 부여시 “사업명칭 만으로도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정하고 있고,

- 서울시의 기준에는 “사업의 주요 핵심내용이 표현”되도록 사업명칭을 부여 하라고 정하고 있어 사업명칭은 사업내용과 부합되도록 부여할 필요가 있으나,

- 동 사업은 행사 개최장소를 당초 서울광장 특설무대에서 노들섬 잔디마당으로 변경한 결과 본예산 편성시 기 부여된 사업명칭(**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운영**)은 '22년도중 실제 추진하려는 사업내용과 더 이상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 사업의 경우, 추경안중 증액편성 요청된 행사운영비(2억 6,700만원)는 법정 사전절차인 투자심사(재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편성사례로 증액편성이 불가하며 세부사업명도 실제 추진하려는 사업내용과 부합되도록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기정예산(4억 3,200만원)의 경우에도 서울광장 선별진료소로 인하여 사실상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운영** 사업은 장소이전이 불가피하기에 장소이전에 따른 투자심사(재심사)를 이행하기 전까지 기정예산에 대한 지출 또한 유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기후환경본부

□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사업별설명서 p.381)

- 동 사업은 새활용플라자의 외부 연결데크 안전펜스 설치공사를 위해 민간위탁금 5,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22〉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추경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민	간	위	탁	금	50
	○ 새활용플라자 외부 연결데크 안전펜스 설치공사 재료비 35,000,000원				35
	○ 새활용플라자 외부 연결데크 안전펜스 설치공사 인건비 15,000,000원				15

-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르면 민간위탁금과 민간위탁사업비를 구분하고 있는 바
 - ①민간위탁금은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를 의미하고, ②민간위탁사업비는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성적 경비”로 명시하고 있음
 - 서울시 추경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동 소요예산은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되나, 편성요청된 민간위탁금 5,000만원은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비용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시설유지관리비를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할 경우, 행정안전부가 예규로서 정하는 예산편성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편성사례에 해당되어 세출과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7) 관광체육국

□ 2022년 제26차 ANOC(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총회 개최 (사업별설명서 p.450)

- 동 사업은 '22년 10월, 대한체육회와 공동주관으로 제26차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 총회를 개최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 12억 5,000만원과 사무관리비 5,000만원을 포함한 13억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표 4-23〉 2022년 제26차 ANOC(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총회 개최 추경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	1,300	1,300	1,300
사무관리비	-	50	50	○ANOC실사단 대응, 번역비, 통역비, 홍보 및 마케팅 관련 50
민간경상사업보조	-	1,250	1,250	○임차료 565 ○운영대행사 용역비 645 ○행사진행비 39

- 편성요청된 **민간경상사업보조**(12억 5,000만원)는 행사를 총괄 운영하는 대한체육회에 임차료, 운영대행사 용역비, 행사진행비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이나
 -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경상적 사업을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 대한체육회는 ①관련 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며 ②그 목적과 설립을 법으로 정하고 있어 “민간”에 해당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 “공기관”에 해당되는 대한체육회로 교부될 보조금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 요청한 것은 부적절한 세출과목 편성사례로 판단됨

○ 그러나 현행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공공단체로 재원을 보조할 수 있는 세출과목을 ①자치단체 경상보조금, ②자치단체자본보조, ③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④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⑤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포함한 5개 통계목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 그 밖의 공기관에 대해서 재원을 보조할 수 있는 적정 세출과목이 사실상 없어 동 사업의 경우에도 대한체육회에 대해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다른 공기관을 지원하는 유사사업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에 적정 세출과목의 신설을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8) 푸른도시국

□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계획 수립용역 (사업별설명서 p.676)

- 동 사업은 도시자연공원구역 5개소에 대해 공원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술용역을 추진하고자 시설비 5억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표 4-24〉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계획 수립용역 추경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산출내역
시 설 비	-	500	500	○관악산 외 4개 도시자연공원 구역 관리계획 수립 500

-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의 “2022년도 추진일정”에는 '22년 6월부터 '23년 5월까지 5억원을 투입하여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사업부서가 수립한 사업계획과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이행하기 위해 사업부서가 기술심사담당관에 제출한 심사요청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따라서 동 사업은 회계연도중 용역이 준공되지 않는 것이 확실시됨에도 용역비 전액(5억원)을 편성요청 하고 있어 예산안 편성단계부터 이미 이월이 전제된 사업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소요예산(5억원)의 승인규모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예산편성단계부터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에도 세출예산 편성시 해당연도 실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요구하여 사고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필요최소한의 예외로서 예

산편성단계부터 이미 이월을 전제한 편성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V. 기타검토 의견

1. 재난관리기금 관련 검토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 (사업별설명서 p.209)
 - 재난관리기금 적립 (사업별설명서 p.577)
- 서울특별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구호계정과 재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음
- 서울시는 금번 제1회 추경안중 코로나19 등 재난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을 기정예산(621억 9,700만원)보다 310.3%, 1,930억원 증액된 2,551억 9,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관련 법령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액의 0.0025%를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의 최저적립액으로 정하고 있는 바,
- 서울시는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에 대한 전출금으로 '22년도 최저적립액(471억 9,700만원)을 초과한 621억 9,700만원을 기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22년도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저적립액 이상을 적립한 것으로 검토됨
 - 금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및 격리시설 운영, 자가검사키트 지원사업,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으로 지출하고자 1,930억원을 추가 전출요청한 것임

〈표 5-1〉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기	금	전	출	금	193,000
코로나19 등 감염병 및 재해·재난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소요예산 적립				19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격리시설 운영 ◦ 사회복지시설 자가검사키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매칭시비 (국비5 : 시비5) ◦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매칭시비 (국비5 : 시비5) ◦ 취약계층 방역물품 등 추가 지원비 				<p>15,402</p> <p>160</p> <p>8,886</p> <p>167,947</p> <p>605</p>	

- **재난관리기금 적립**의 경우,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으로 전출하고자 기금전출금을 기정예산(3,659억 2,400만원)보다 29.2%, 1,071억원 증액된 4,730억 2,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관련 법령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액의 0.01%를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의 최저적립액으로 정하고 있어, 이미 '22년도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은 최저적립액(1,603억 1,200만원)을 초과한 3,659억 2,400만원을 기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그럼에도 금번 추경안을 통해 경영위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급 등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자 기금전출금 1,071억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것임

〈표 5-2〉 재난관리기금 적립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기	금	전	출	금	107,100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지원			107,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위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급 			77,000	
				15,050	
				15,050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정책사업의 경우에만 사업설명서를 작성하고, 행정운 영경비 및 재무활동은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1,930억원), 재난관리기금 적립(1,071억 원)**의 경우에는 재무활동에 해당되어 사업설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에 포함되나, 금번 추경안을 통해 증액하는 규모가 1,000억원 이상으로 추 가경정예산안의 사업별설명서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사료됨

2.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검토

- 관련 법령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기존 법이 사업주에게 안전과 보건에 대한 책임을 물었으나 법은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의무와 책임주체를 경영책임자, 법인, 기관 등으로 확대한 것으로
- 지난 '21년 1월, 제정되어 '22년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에도 관련 법령이 규정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안전과 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고자 금번 추경안중 18개 사업, 74억 3,400만원을 증액 요청한 것임

〈표 5-3〉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시설물

(중대시민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 ▶ (시설물안전법) 도로시설, 옹벽, 하천, 상하수도, 건축물(공동주택 제외)
- ▶ (실내공기질안전법) 지하역사, 실내 문화·체육시설, 업무시설, 복합건축물 등
- ▶ (도시철도법, 해운법) 도시철도차량, 여객선

〈표 5-4〉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증액 요청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추경사유
안 전 총 괄 실	외발산지하차도 보수	-	1,846	1,846	손상타일 보수
"	도로유지 일상관리	2,709	1,800	4,509	긴급출동용역 확대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개선	900	840	1,740	유해위험요인 사전제거
푸른도시국	서울로 7017 안전난간 재정비	2,240	643	2,883	낙하물에 대한 안전조치
"	공원재해예방사업	-	394	394	안전장비 추가 구비
문 화 본 부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주변 성벽 위험구간 해제복원	(X1,578) 2,255	338	(X1,578) 2,593	안전전담 기술인 배치
안 전 총 괄 실	도림천복개(좌안) 보수	500	300	800	주요손상물량 복구
기 후 환 경 본 부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1,200	275	1,475	외벽 외장재 점검 및 보수
푸른도시국	동물원 유지관리	2,307	245	2,552	연조 시스템 구축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
여성가족정책실	여성발전센터 운영	6,286	150	6,436	수영장 천장 공사 및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복 지 정 책 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787	133	1,921	지진방재 종합계획에 따른 기능보강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2,856	120	2,976	외부 배수로 보수 공사
"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168	99	267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
기후환경본부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SR센터) 운영 효율화	3,034	80	3,114	컨베이어 및 시설 안전조치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관 운영	89,455	56	89,512	시설 정기 안전점검비용
기후환경본부	서울재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4,471	50	4,521	연결데크 안전펜스 설치
푸른도시국	공원편익(판매)시설 유지 및 보수	297	50	347	노후 지붕 시설물 정비
"	서울대공원 산업안전보건 운영관리	334	15	349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3. 사전절차가 필요한 사업 검토

□ 민간위탁 동의 관련

■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 (사업별설명서 p.517)

○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은 민간위탁금 7억 7,5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으로

- 소요예산중 민간위탁금을 신규 편성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동 민간위탁금 편성을 위해 지난 3월 10일, 관련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한 바, 소관 상임위원회인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4월 1일 가결한 것으로 확인됨

〈표 5-5〉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명	제1회 추경안 민간위탁금	회부일 (심사일)	의결결과
시 민 건 강 국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	775	'22. 3.10 ('22. 4. 1)	가결 ('22. 4. 1)

※자료근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안정보

○ 다만, 동 사업의 경우, 사업별설명서중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에는 '22년 2월 22일 심의결과 “적정”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바,

- 사업부서가 동 안건제출에 앞서 관련 조례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한 후, 그 결과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사료되나
- 이는 결과적으로 의회가 추경안 심사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부정확한 내용을 사업별설명서에 기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출자·출연 동의 관련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사업별설명서 p.97)
-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사업별설명서 p.429)
-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사업별설명서 p.293)
-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사업별설명서 p.127)
-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 (사업별설명서 p.636)
-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사업별설명서 p.417)
-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 (사업별설명서 p.249)

○ 관련 법령은 소요예산중 출자 또는 출연금을 편성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는 바, 금번 제306회 임시회중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7개 세부사업과 관련된 4건의 출자·출연 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됨

〈표 5-6〉 제1회 추경안 관련 출자·출연 동의안 심의 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제1회 추경안 출자·출연금	회 부 일 (심사일)	의결결과
노동공정상생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10,000	'22. 3.16 ('22. 3.31)	가결 ^{주1)}
관광체육국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1,500	'22. 3.16 ('22. 3.31)	가결 ^{주1)}
문화본부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1,450	'22. 3.16 ('22. 3.29)	가결 ^{주1)}
스마트도시정책관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693	'22. 3.16 ('22. 4. 1)	가결 ^{주1)}
주택정책실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	3,978	'22. 1.25 ('22. 2.11)	'22. 2.21 ^{주2)}
재무국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2,368	'21. 8.18 ('22. 2.11)	'22. 2.21 ^{주2)}
도시교통실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1,108	'21. 8.18 ('21. 8.31)	'21. 9.10 ^{주2)}

※ 자료근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안정보

주1) 동 안건은 금번 제306회 임시회중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을 표기한 것임

주2) 동 안건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표기한 것임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무이자·무보증료 등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추가로 시행하기 위해 출연금 100억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것으로
 - 소요예산중 출연금을 편성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사업부서가 지난 3월 10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을 위한 안건을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가 지난 3월 31일 가결한 것으로 확인됨

- **서울관광재단 출연금**은 포스트코로나 관광수요 선점을 위한 서울관광 해외 광고 제작을 위해 출연금 15억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것으로
 - 관련 법령에 따라 소요예산중 출연금을 편성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을 필요가 있어 지난 3월 10일, 관련 안건을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3월 31일 가결한 것으로 확인됨

- **세종문화회관 출연금**의 경우에도 출연금 14억 5,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안건을 지난 3월10일 제출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금번 임시회 회기중인 3월 29일 가결한 것으로 확인됨

- **서울디지털재단 출연**은 출연금 6억 9,3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소요예산중 출연금을 편성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어 안건을 지난 3월10일 제출한 바
 -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4월 1일 의결한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여 제출한 ①**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 ②**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③**지하철역 승강편의 시설 설치**의 경우에는 추경안 제출 전 소관 상임위원회 출자·출연 동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 ①**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은 민간의 토지를 활용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2년 시범사업을 하고자 기정예산(1억 500만원)보다 3,789.0%, 39억 7,800만원 증액된 40억 8,3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서울시는 동 출자금 편성과 관련된 안건을 지난 '21년 10월 제출한 바 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사업규모 추계 등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과 관련된 부분을 출자대상에서 제외하여 수정가결 하였음

■ 서울시는 지난 1월, 이번 추경안에 편성 요청된 출자금과 관련된 안건을 다시 제출하여 지난 2월, 소관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으로 확인됨

- ②**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은 기정예산(26억 3,600만원)보다 89.8%, 23억 6,800만원 증액된 50억 5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을 통해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 지원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동 출연금과 관련된 안건이 지난 '21년 8월 제출되어 지난 '21년 9월, '21년 11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두 차례 심사보류된 바 있으나, 지난 2월 개최된 제305회 임시회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으로 확인됨

- ③**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는 기정예산(116억 4,900만원)보다 9.5%, 11억 800만원이 증액된 127억 5,7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1역사 1동선 확보 추진 역사중 1개소(복정역)에 대한 **출자금** 11억 8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금번 추경안에 편성 요청된 **출자금**의 경우, “복정역 E/L 설치 설계용역”이 '22년 3월에 완료됨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총 공사비(44억 3,200만원)의 25.0%, 11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설계완료에 따른 공사를 실시할 것으로 확인됨
 - 관련 법령은 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는 바, 동 출자금 편성과 관련된 안건은 지난 '21년 8월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의 예비심사(원안가결)를 거쳐 본회의에서 '21년 9월에 가결한 것으로 확인됨

4. 사업별설명서 부실작성 관련

- 사업별설명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제출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로서 예산의 편성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요 참고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관련 기준에 따라 누락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행정안전부의 규칙은 경상적 경비와 투자사업비의 편성기준을 구분하고 있어 예산의 편성과정은 물론 심사 시에도 **사업성격**만큼은 혼돈되어서는 아니될 사안인 바,
 - 서울시의 기준에도 **사업성격** 작성시 지출효과가 자본형성에 이르게 되는 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 자본이전 등의 “투자사업”으로 구분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러나 9개 실·본부·국의 18개 세부사업은 사업별설명서중 사업내용을 반영하는 데 있어 자본지출(400)에 속한 세출과목(통계목)을 소요예산에 편성요청한 것임에도 **사업성격**에는 “경상사업”으로 기재함으로써 ㉠사업내용 및 예산편성내역(투자사업)과 ㉡**사업성격** 기재내용(경상사업)이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
 -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내용이 단순 보수·정비 및 유지관리에 해당하여 예산지출의 효과가 자본형성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경상사업”으로 기재한 것으로 사료되나,
 - 서울시의 기준에는 시설물의 설치·구축 뿐만 아니라 보수 및 유지관리도 “투자사업”에 포함시키고 있어 **사업성격** 작성시 “투자사업”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표 5-7A〉 “사업성격”을 경상사업으로 잘못 표기하여 제출한 사업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사업의 주요내용)	추경(안) ^{주1)}		사업성격(경상·투자) 작성현황		
		투자사업비 ^{주2)} (통계목)	투자사업비 구성비 ^{주3)}	사업별 설명서	작성 내용	
1인가구특별 대책추진단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추진 (※노후 보안등을 스마트보안 등으로 교체)	3,430	3,430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	p.5	경상
여성가족정책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균형발전특별회계) (※신축, 매입장기임차 등 다 양한 방법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지원)	24,277	24,277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	p.33	경상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신축 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603	603 [①시설비, ②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100.0	p.45	경상
노동공정상생 정책관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 설비 개선)	2,538	2,538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	p.113	경상
경제정책실	패션산업 기반 확충 (※의류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 등)	4,904	4,000 (자치단체자본보조)	81.5	p.188	경상
복지정책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증 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1,921	1,909 (①자치단체자본보조, ②민간위탁사업비)	99.3	p.213	경상

※ 주1) 기정예산과 금번 추경을 통한 증·감편성 요청액의 합계

주2) 세출예산과목 중 자본지출(400)에 해당하는 통계목으로 편성된 소요예산의 합계

주3) 추경(안) 중 투자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

〈표 5-7B〉 “사업성격”을 경상사업으로 잘못 표기하여 제출한 사업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사업의 주요내용)	추경(안) ^{주1)}		사업성격(경상·투자) 작성현황		
		투자사업비 ^{주2)} (통계목)	투자사업비 구성비 ^{주3)}	사업별 설명서	작성 내용	
복지정책실	스마트플러그 지원 (※고독사 위험가구 스마트플러그 지원)	220	220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	p.218	경상
”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전동휠체어 이용이 많은 장소에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	85	75 (자치단체자본보조)	88.2	p.229	경상
”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시비) (※노숙인 복지시설에 대한 시 설 개보수, 생활환경 개선 등)	591	591 [①민간위탁사업비, ②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	100.0	p.243	경상
도시교통실	디지털물류시범 도시 조성 지원 (※디지털물류시범도시 추진계 획 수립)	300	300 (시설비)	100.0	p.271	경상
”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 도 스마트장비 및 불법주 정차단속카메라 설치, 횡단 보도 주변정비 등)	29,269	28,669 (①시설비, ②감려비)	97.9	p.283	경상
시민건강국	재난거점병원의 의료지원차량 (※관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지 정된 서울의료원에 대해 재난의료 지원차량 구매 지원)	230	230 [민간자본사업보조 (안전재원)]	100.0	p.482	경상

※ 주1) 기정예산과 금번 추경을 통한 증·감편성 요청액의 합계

주2) 세출예산과목 중 자본지출(400)에 해당하는 통계목으로 편성된 소요예산의 합계

주3) 추경(안) 중 투자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

〈표 5-7C〉 “사업성격”을 경상사업으로 잘못 표기하여 제출한 사업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사업의 주요내용)	추경(안) ^{주1)}		사업성격(경상·투자) 작성현황		
		투자사업비 ^{주2)} (통계목)	투자사업비 구성비 ^{주3)}	사업별 설명서	작성 내용	
시 민 건 강 국	반 려 건 놀 이 터 조 성 (전 환 사 업) (※시근린공원 반려건 놀이터 설치, 자치구 반려건 놀이 터 설치 지원)	250	250 (①시설비, ②자치단체자본보조)	100.0	p.527	경상
안 전 총 괄 실	도 름 천 복 개 (좌 안) 보 수 [※도림천복개(좌안) 구조물 교면 방수 및 포장]	800	800 (시설비)	100.0	p.604	경상
”	외발산지하차도 보수 (※외발산지하차도 타일보수 및 내오염도장 등)	1,846	1,846 (시설비)	100.0	p.609	경상
”	개봉철도고가 바닥판 교 체 정 비 공 사 (※개봉철도고가 상·하행 바닥 판, 거더교체 등 성능개선)	3,742	3,742 (①시설비, ②감리비)	100.0	p.617	경상
”	공 단 IC 보 수 공 사 (※공단IC 471㎡ 보수보강)	294	294 (시설비)	100.0	p.621	경상
주 택 정 책 실	계 획 적 소 규 모 주 택 정비사업 추진 지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비 지원, 사업성분석 및 기본설계비 지원 등)	5,100	4,940 (①자치단체자본보조, ②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96.8	p.640	경상

※ 주1) 기정예산과 금번 추경을 통한 증·감편성 요청액의 합계

주2) 세출예산과목 중 자본지출(400)에 해당하는 통계목으로 편성된 소요예산의 합계

주3) 추경(안) 중 투자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

○ 아울러 서울시의 기준에는 사업별설명서 중 **달성목표**에 해당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기재하되, 구체적인 내용으로 “반드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소관 **뷰티도시서울 추진**과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소관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소관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을 포함한 3개 세부사업의 경우, **달성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임의로 누락시켜 제출하였으며,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서울형 뉴딜일자리의 경우**, 금번 추경을 통해 당초 본예산(3,700개)보다 500개 증가된 4,2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임에도, 본예산 심사시 기 제출한 달성목표(일자리 3,700개 창출)를 금번 추경안에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제출된 것으로 검토됨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의 경우, 당초 본예산에 관련 법령에 따른 최저적립금(471억 9,700만원)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립금(150억원)까지 포함하여 총 621억 9,700만원을 편성한 것임에도 추경안에는 달성목표를 “기금 최저적립액 확보”로 기재하여 제출한 바,
- 금번 추경안의 경우에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가적립금(1,930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이기에 단순히 최저적립액 확보를 동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표 5-8〉 “달성목표”를 부실작성 하여 제출한 사업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달성목표 작성현황	
		사업별설명서	작성내용
경제정책실	뷰티도시서울추진	p.160	달성목표 : 신규사업으로 해당없음
”	서울형 뉴딜일자리	p.173	달성목표 : 일자리 창출 수(3,700개)
복지정책실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	p.211	달성목표 : 기금 최저적립액 확보
관광체육국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	p.436	(작성누락)
시민건강국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p.510	달성목표 : 인건비성 경비이므로 목표 없음

○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에 제출되는 사업별설명서는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한정된 심사기간 동안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 향후 사업별설명서에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을 누락시켜 제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2022년도 본예산 의결시 부대의결 관련 검토

-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년도 본예산 심사시 수정안을 의결하며 부대의결을 통해 예산 집행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 바,
-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의 경우, 국제 설계 공모이후 '22년도에 편성된 예산으로 즉시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소요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을 통해 증액 조정하는 등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할 것을 부대의결 하였음
 - 동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지난 3월, 공공사업 기획부터 준공까지 설계업무의 총괄 자문을 지원하는 공공건축 관리자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되며, 향후 4월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구성 및 설계공모 의뢰, 4~7월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8월에는 국제 설계 공모 공고를 통해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할 것으로 방침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됨
- **주거복지센터 운영**은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되었던 16개 지역주거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기관들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한 바, 기존 위탁기관 종사자들의 직업 안정성에 대한 방안을 확보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결 하였음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6개소의 주거복지센터를 위탁운영할 업체에 대한 공고를 진행중이며, 사업 참여를 포기한 1개소를 제외한 법인들과 지속적으로 협의중인 것으로 확인됨

VI. 성과계획서 및 성인지 예산서 관련

- 관련 법령은 예산안 제출시 **성인지 예산서**와 **성과계획서**를 첨부서류에 포함시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과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현행 법령이 추경안 제출시 성과계획서와 성인지예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금번 제1회 추경안의 경우에도 성인지 예산서와 성과계획서 제출이 생략된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가칭 '성과계획서 변경안'과 '성인지예산서 변경안'이 첨부되지 않은 것을 문제시할 사안은 아닐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정예산에 경정을 요청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회계연도 중 예산의 변동이 발생되면 성과계획서와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변경이 수반될 수 밖에 없어 추경안 제출시 가칭 '성과계획서 변경안'과 '성인지예산서 변경안'이 첨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현행 법령 등이 가칭 '성과계획서 변경안'과 '성인지예산서 변경안'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규정 마련과 절차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